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광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

발의연월일 : 2026. 10. 30.

발 의 자 : 정지광, 김해바른, 김형우, 박미정, 박성준, 김안숙, 하서영(7명)

찬 성 자 :

1. 제안이유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9월 30일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반영하고, 의정활동비의 적용기간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의 적용기간을 정한 비고를 삭제함(안 별표 1 비고)

나.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정함(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지방자치법」 제4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안) 증가분 반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를 삭제한다.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지 급 액
2027년도	월 3,464,150원
2028년도	2027년 월정수당에 2027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9년도	2028년 월정수당에 202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30년도	2029년 월정수당에 2029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

[별표 1] <개정 2024. 5. 16.>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지급액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 원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비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지급액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 원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별표 2] <개정 2024. 5. 16.>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지 급 액
2023년도	월3,117,290원
2024년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5년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6년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지 급 액
2027년도	월 3,464,150원
2028년도	2027년 월정수당에 2027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9년도	2028년 월정수당에 202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30년도	2029년 월정수당에 2029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붙임]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2026. 10. 15. 시행)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2026. 7. 1. 시행)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지광 의원 대표 발의)서명부

발의자		찬성자	
의원명	서명·날인	의원명	서명·날인
정지광			
김형우			
박의정			
하서영			
김해바른			
전안숙			
박성준			